

사전지원제외 및 중간점검 대상관리 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중간점검 대상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중간점검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 배 미만 5. 최근 3 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7.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조치	○ 지원불가	○ 평가위원회에 “중간점검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중간점검대상기업”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 - 중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일정에 맞춰 진행되는지 상시 확인